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5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7. 10. 16.
4. 회부일자 : 2017. 10. 24.

II. 제안이유

-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며, 공익제보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공익제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현행 조례에 통합·규정하여 보상금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추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국민권익위원회, 2017.8.9.)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추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교육기관 및 교직원등의 공익제보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가. “교육기관”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추가
 - 나. “교직원등”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 사인 추가
 - 다. “공익제보” 대상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추가
2. 교직원등이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의무를 신설함(안 제4조).
3. 공익제보책임관을 신설하고 감사관으로 지정함(안 제7조).
4. 공익제보센터의 제보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9조).
 - 가.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제보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제보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의무 추가
 - 나. 공익제보센터에서 공익제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 신설
5.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를 ‘공익제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심의·의결 내용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함(안 제10조).
 - 가. 심의·의결 내용 추가
 - 공익제보자 선정
 - 구조금 및 보상금·포상금의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나. 외부위원의 자격 추가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공익제보자 지원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

가. 공익제보자 등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우선 고려

나.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등에게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표창 추천

7. “보상금”과 “포상금”을 구분하여 규정(안 제14조, 제15조).

8.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환수 규정 신설(안 제17조).

9.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등에 대한 교육감 표창 규정 신설(안 제21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조례안〔별첨2〕 참고.

3. 기 타 :

○ 신·구조문 대비표 : [조례안〔별첨1〕 참고]

○ 입법예고(1차 2017. 7. 4. ~ 7.25., 2차 2017. 9. 15. ~ 9. 24.) 결과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157호로 제출되어 2017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면에서의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공익제보 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 공익제보책임관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공익제보에 따른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과 중복지급 금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규정에 따른 업무혼선을 해소하였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적인 입법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규의

명확화를 통해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인바 취지 면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용어의 통일적 사용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의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 할 수 있고, 동 법을 비롯한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 모두 ‘공익제보’가 아닌 ‘공익신고’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개정조례안이 전부개정인 만큼 법률과 조례의 법령체계에 따른 입법의 통일성 측면에서 용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보”라는 용어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공익제보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는 흔히 ‘양심선언’ 또는 ‘내부 고발’로도 불리며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불법, 비윤리 또는 부당한 활동이나 공공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을 내부의 책임자, 관련 감독기관 등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도 공익신고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등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공익신고의 정의를 제보를 포함하여 폭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와 신고라는 두 용어를 반드시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할 실익이 없다면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통일성 확보와 용어 상호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1)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입법형식 측면에서의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전 조문에 걸쳐 불필요하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순화된 표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2조제1호에서 ‘교육기관’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제2호와 제3호 ‘교직원등’과 ‘공익제보’도 상위법령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정비는 법규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애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5호에서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면서도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현행 ‘시민’으로 규정된 조항을 ‘자’로 개정하였고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현행 제12조제1항의 ‘사람’을 오히려 ‘자’로 규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애 일관성 결여되어 있는 조항도 존재하는바,

통일적인 용어를 규정함으로써 법규의 명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서 지적한 규정의 문구를 모두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끝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제15조 관련)에서 부칙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여 그 자치법규의 시행일과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와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하는 부분인바,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동 부칙

1) 이러한 지적은 동 조례안의 제정과정이었던 제25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임(제252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참고).

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전부개정안 중심으로 편집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교육 관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u>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1. "교직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상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할 학교의 교직원과 법인의 임직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p> <p>2. "공익제보"란 교육청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에 대한 제보를 말한다.(단서 신설)</p> <p>가. (생략)</p> <p>나. <u>교육청의 예산사용, 교육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교육청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교육청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u></p>	<p>제1조(목적) ----- 공익제보를 처리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u>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며,</u>-----</p> <p>-----.</p> <p>제2조(정의) -----뜻은 -----.</p> <p>1. "<u>교육기관</u>"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p> <p>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p> <p>나.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u>각급 학교</u></p> <p>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u>학교법인</u></p> <p>2. -----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 및 임직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p> <p>3. "공익제보"란 교육기관 ----- ----- 침해하는 ----- ----- 말한다. 다만,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한 경우와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제보를 한 경우는 공익제보로 보지 아니한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u> ----- 끼치는 -----.</p>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신 설>

<신 설>

라. (생략)

3. "공익제보 조사"란 교육청이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제
보하였거나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 수사
의 단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5. (생략)

6.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
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 밖
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
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
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
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
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
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
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
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

다. ----- 제2조에 따른 -----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바. (현행 '라'와 같음)

4. -----
----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
-----.

5. ----- 제3호 ----- 공익제보를
하였거나 -----
-- 단서 또는 증거자료 ----- 사람을 -----.

6. (현행 '5'와 같음)

7.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8.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8.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교육청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보조금"이란 교육청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청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를 거부하고 이에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생략)

<신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조(교육청 기관과 관계 기업 등의 책무) 교육청이 관할하는 기관과 교육청에 관계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 각급 학교, 학교법인 등-----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이하 "공익제보위원회"라 한다) -----기관-----.

<삭제>

<삭제>

제3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
----- 공익침해를 거부하는 행위와 공익침해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공익제보 의무) ① 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한다)를 알게 된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등은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

② (현행과 같음)

③ -----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청 관할 기관 등의 책무) -----
-----관계된 단체, 법인 등은 부패행위 및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
-----.

제7조(공익제보책임관) ①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교육청** 사무와 관련하여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생략)
3. **시의회**
4. **위원회**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교육청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 4.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의 교육, 공익제보의 처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공익제보책임관을 둔다.

② 공익제보책임관은 감사관으로 한다.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
----- **교육감**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공익제보를 할 -----.

1. **국민권익위원회**

2. (현행과 같음)

3. **공익제보위원회**

4. **<삭 제>**

② ----- **자** -----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

1. -----
----- **인적사항.(단서 삭제)**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

3. ~ 4. (현행과 같음)

③ -----

----- **제보**-----
-----.

④ ----- **구술제보**-----
----- **후 이를** -----
----- **읽어주고** -----
-----.

⑤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제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제보자의 위임장, 공익제보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공익제보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

제13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우편·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청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
2. 각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송부 이첩된 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신 설>

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③ 센터는 신고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교육청이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해당부서는 공익제보 사항을 조사하여 조치한다.

⑤ 센터의 장은 접수된 공익제보가 교육청의 사무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청의 사무와 관계있음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월별로 미조사 사항에 대한 관계 서류 모두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자매

2. 공익제보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제9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
효율적으로 공익제보를 접수 .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센터의 장과 필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 호의 -----관장한다.

1. 온라인, 우편, 전화 -----

2. ----- 단체로부터 이첩된 공익제보 -----

3.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처리

4.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

③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제보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자체 조사 및 처리에 대한 공익제보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자체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한다.

④ ----- 지도, 감독, 규제 -----

⑤ ----- 교육기관 -----
----- 한다.

⑥ -----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

<신 설>

<신 설>

⑦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보 접수 현황에 대해 교육감은 월별로,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신 설>

2.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 심의

3.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심의

4. ~ 6. (생략)

7.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제보자가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리 완료된 동일한 공익제보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하는 경우
5.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공익제보 내용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공익제보 내용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공익제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⑧ 센터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종결하는 경우 공익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⑨ -----
----- 공익제보위원회 -----
-----.

<삭 제>

제10조(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
----- 심의 의결-----
-----소속으로 공익제보위원회-----
-----.

1. (현행과 같음)

2. 공익제보자 선정

3. ----- 심의 및 지원 사항 권고

4. 제13조에 따른 구조금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른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를 포함한 지급에 관한 사항

5. ~ 7. (현행과 같음)

8. ----- 우수기관 -----
-----.

8. (생략)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10.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한다. 교육청 감사관은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신설>

③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행정 총괄 사무관으로 한다.

1. ~ 2. (생략)

<신설>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신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

9. (현행과 같음)

10.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

11. (현행과 같음)

② 공익제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2.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과반수의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제보와 관련된 분야에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

④ 공익제보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장으로 한다.

⑤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⑥ ----- 경우에는 ----- 해임하거나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상 -----

3.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단되는 경우

<신 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② (생 략)
-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공익제보위원회-----
-----.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⑨ 공익제보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때에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1.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공익제보위원회-----공익제보자-----
----- 공익제보위원회-----
-----.

제12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 공익제보내용-----

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신 설>

- 5. 학생을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권고
- 6.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학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보상금) ④ 공익제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교육청**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 등이 확정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2]**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교육청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5. 공익제보자 등이 전보,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
- 6.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등이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표창 추천
- 7. 공익제보와 관련된 학생에게 규정위반 등의 -----

- 8. -----

-- 전학 조치

제14 조(보상금) ① -----
----- **사항으로 교육기관의**

-----.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 **별표 2에 따른 ----- 공익제보위원회**-----.
- ③ ----- **경우와 산정된 보상금이 천원 단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④ ----- **제보**-----
----- **직무와 -----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에** -----.
- ⑤ ----- **교육기관의 재정 증대나 수입 회복에** -----

-----.

⑥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제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등의 액수** 이상이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신청
-----**한 날부터** -----
-----.

⑦ -----

----- **이 경우**
보상금 ----- **정**
당한 -----
-----.

⑧ -----
있는 -----
-----.

제15조(포상금)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포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6조(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
----- **자는** -----
보상금등을 ----- **다**
만, ----- **보상금**
등-----
-----.

② ----- **보상금등**-----
----- **보상금등**
----- **받는** ----- **금액이** -----
----- **금액** -----
보상금등-----, **이** -----
----- **금액**
-----.

③ ----- **보상금등**-----
----- **보상금등**----- **보**
상금등-----
보상금등-----.

<신 설>

제14조(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2.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3.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4.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5. 직급별 3인 이상의 공익제보 접수자 선정
6.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7.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8.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9.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10. 공익제보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등을 반환하도록 신청인에게 그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3항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의 지정) -----고려하여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기관을 지정-----.

1. 기관 자체 규정에 공익제보자의 보호 조항 명시 여부
2.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익제보자 보호 조항 게시 여부
3. 연간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여부
4. -----
----- 선정 여부
5. 최근 5년간 3명 ----- 선정 여부
6. ----- 보관 여부
7. ----- 제보 -----
-- 점검 여부
8. 비정규직원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 여부
9. 연간 2회 이상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여부
10. 공익제보 담당자들 -----

기교육 실시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1. (생략)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7조(우선구매 등 지원) 교육감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교육감은 환경조성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표창의 수여)

<신 설>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지원)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생략)

제2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1. (현행과 같음)
2. -----우수기관 -----

제20조(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지원)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삭 제>

제21조(표창의 수여)

-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등이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

제22조(교육지원) -----

--- 하며, 이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

제23조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4조 ----- 시행에 필요한 -----

[별표](조례안 참고)

관계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30호, 2017.4.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포상금)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